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관리규정 5-2-9

규정번호 5-2-9
제정일자 2015.12.15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8차 개정
관리부서 상담센터

[규정명칭 변경 및 전면개정 2019.6.17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체계적인 취업진로 지도 및 상담을 통해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심리적 건강 및 진로 지도 등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우수인재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우리대학 학생의 취업·진로, 심리, 생활상담 및 지도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다.

제3조(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위원회) ① 학생진로·심리 상담 지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(개정 2020.03.30.)

②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교목실장, 대학혁신본부장, 교수학습센터장, 글로벌교육센터장, 성인학습지원센터장, 생활관장, 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우리대학 교직원, 학생 및 상담분야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0.03.30., 2021.01.21., 2022.06.08., 2023.12.11.,2024.7.24)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, 부위원장은 상담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1.01.21.,2024.7.24)

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03.30.)

1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규정 및 지침 제·개정
2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운영 및 정책 방안 중요사항
3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연간계획 및 성과관리
4. 기타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.(개정 2020.03.30.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상담센터 담당자로 한다.

제5조(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지원단) ① 학생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진로·심리 상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3.30.)

② 지원단은 학생지원처장을 단장으로 상담센터장을 부단장으로 하고, 총장이 관련부서 교직원 약간명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(개정 2021.01.21.)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(개정 2020.03.30.)

1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통합 및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
2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실적 및 성과관리
3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협력체계 구축
4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

⑤ 지원단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보고를 위원회를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지원부서에 안내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한다.

제6조(지원조직) <삭제 2020.03.30.>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부서 및 센터규정을 준용하고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‘진로및심리상담규정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0> (생략)

<21> 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의 "진로취업지원센터장"을 "진로취·창업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제3조제2항의 "교육혁신지원센터장"을 "교수학습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<22> - <25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·제3항)